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493

제안연월일: 2025. 2.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81	이수진의원	2024. 8. 9.	2024.11.14.
	2205493	이수진의원	2024.11.12.	2025. 1.14.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1.21.)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23.)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실태조사 사항으로명시하고 있지 않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폭력·성희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하여는 명시하면서도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보건의료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추가함 (안 제7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 12조의2 신설).
- 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추가함(안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처우"를 "보수·처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

- 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14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	제7조(실태조사) ①
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	
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5
근무여건 및 <u>처우</u> , 이직·퇴	<u>보수·처우</u>
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2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모
	성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
	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

경 개선)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 관) ① (생 략)
 -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5. (생략)

<신 설>

- 경 개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
 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
 른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
 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
 ·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 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 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 (5) 보건목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 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 영할 수 있다.
-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14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

	<u>원</u>
<u>6.</u> ~ <u>9.</u> (생 략)	<u>7.</u> ~ <u>10.</u> (현행 제6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